

충청북도청주고인쇄박물관설치조례폐지조례 (안)

의안 번호	34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 .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안 이유

- 세계적인 인쇄 문화의 유적지인 청주고인쇄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청주시로 이관하고
- 설치 근거 조례등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함

주요 골자

- 충청북도청주고인쇄박물관설치조례를 폐지하고
- 이와 함께 충청북도청주고인쇄박물관관람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.

근거 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05조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 제3항

충청북도청주고인쇄박물관설치조례폐지조례(안)

충청북도청주고인쇄박물관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
- ②(폐지조례) 충청북도청주고인쇄박물관관람료징수조례(조례제 1834호, 1990년11월16일)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